

광양시 생활임금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

의안 번호	4096
----------	------

2025.6.11.
산업건설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발의자: 2024. 7. 8.(월) 백성호 의원

나. 회부일: 2024. 7. 8.(월)

다. 상정일: 2025. 6. 11.(수)

- 제338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부결”

2. 제안 요지

가. 제안 취지

- 광양시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생활임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나.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 생활임금의 적용범위를 규정함
-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 생활임금 결정시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
- 생활임금 제도 확대 장려를 위한 사항 등

3.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광양시 또는 시 출자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에게 최저 생계 이상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 지급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으로써 입법고문의 자문 결과 반영 및 집행기관(투자경제과)의 의견을 받는 등 검토하여 상정된 안건입니다.
- 생활임금 관련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21-0027, 충남 천안시)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생활임금으로 인정되는 임금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의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를 생활임금 적용대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답변하거나 해석한 사례가 있습니다.
-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시청 소속 근로자에 대한 채용 및 관리는 지자체의 전속적인 권한(지방자치법 제118조)으로 생활임금 도입 여부는 재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을 검토할 사항이며,
- 출자·출연기관과 민간 위·수탁기관의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사항은 모두 독립된 법인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자체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사항으로 지자체에서 관여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광양시가 지급하고 있는 생활임금 형태의 2024년 기간제근로자 임금 지급액은 도내 6개 시군 중 타시군 보다 높은 수준으로 실효성이 부족함에 따라 생활임금 조례 도입 반대 의견을 제시하여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원님들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답변 요지: 회의록 참조

5. 심사 결과: 부결(출석위원 7명)

- 부결사유: 공공부문 적용이후 인건비 상승에 따른 관련 일자리 감소 및 민간확대 압박에 따른 지역 내 소상공인·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과 생활임금이 비정규직·위탁근로자 등 일부에게만 적용될 경우 내부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 할 수 있으며, 기존 공무원이나 정규직과의 임금역전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6. 기타 사항

- 해당 없음.

붙임 광양시 생활임금 조례안

광양시 생활임금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생활임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을 말한다.
3.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4.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 용역제공 등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2.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근로자
3. 시의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업체 및 기관 등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2.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소속 근로자 중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동일하게 적용받는 근로자
3.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4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생활임금 업무담당 국장, 예산담당 부서장 및 인사담당 부서장
2.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3. 근로자 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에 소속된 공무원 및 시의원이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7조(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시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공개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시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2. 물가 상승률, 노동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유사노동자의 임금 등
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생활임금액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생활임금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2. 생활임금 적용대상
3. 그 밖에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제9조(생활임금의 장려) ① 시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와 위탁·용역·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생활임금 운영상황을 성실히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